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순 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2건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보고자:이재운 위원장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1건(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보고자:김향란 위원장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4건(조례안 3, 일반의안 1)
- 보고자: 표주숙 위원장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7건(조례안 6, 일반의안 1)
- 보고자: 신재화 위원장



의 사 일 정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6. 24.(월) 10:00>

부 의 안 건	비고
【제2차 본회의】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
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3
 4.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총무위원회 : 4 ~ 7
8.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9.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안 14.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산업건설위원회 : 8~14
【산 회】	

※ 본 일정은 의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6.24.)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l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 55, 56호

□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4. 5. 30.

○ 제 출 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24. 5. 31.

○ 상정일자 :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6. 21. 상정·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이동복 재무과장, 김현태 수도사업소장,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나.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른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의결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이월액)
합 계	983,778	990,665	772,309	218,356
일반회계	892,990	897,793	699,782	198,011
특별회계	90,788	92,872	72,527	20,345

2)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ы	_		실제수납액	거기나무에	미시네	비율(%)	
구 분	(A)	(B)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C/A	C/B
계	983,778	996,395	990,665	674	5,056	100.7	99.4
일반회계	892,990	902,891	897,793	674	4,424	100.5	99.4
특별회계	90,788	93,504	92,872	0	632	102.3	99.3

3)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i>증</i> 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연연 임 에 (E)	보조금 반납액 (F)	집행잔액 G=C-D-E-F
계	816,505	167,273	983,778	772,309	170,978	4,694	35,797
일반회계	741,584	151,406	892,990	699,782	159,094	4,643	29,471
특별회계	74,921	15,867	90,788	72,527	11,884	51	6,326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 이 용: 해당사항 없음

□ 전 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그 브 예사애		전 용	미고	
구 분	예 산 액	감 액	증 액	ᅵᆛ
8건	981	76	76	

- □ 이 체
 -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OI TEOR	이 체	ш¬	
구 분 예산	예 산 액	감 액	증 액	비고
200건	65,243	65,243	65,243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OI TE OH	이 체	비고	
구 군 	예 산 액	감 액	증 액	미ᅶ
11건	479	479	479	

-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AL TEM	이 체	ш¬	
· 구 군	예 산 액	감 액	증 액	비고
7건	11,192	11,192	11,192	

□ 전 용(일반회계)

- <u>예산 전용</u>은 총 <u>8건이며 예산액 981백만원 중 76백만원을</u> 전용하였음
-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8건의 전용 사업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위해서 적절 하게 전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u>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이나</u>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차후 전 부서에서는 예산의 전용 시 상기 권고 사항을 적극적 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

□이체

○ 예산 이체는 <u>218건 76,914백만원</u>이며, <u>사유는 모두 조직개</u> 편에 따른 부서 또는 업무 이동임

5) 계속비 결산

(단위 : 백만원)

		당 해 연	도 집 행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기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18건)	69,942	29,268	40,524	150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2,622	2,341	206	75
노인요양시설확충(신축)사업	14,679	5,588	9,091	0
화관광자원개발-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전환)(전환사업)	3,590	602	2,988	0
빼재 익스트림 레저모험타운 조성사업(전환)	3,361	885	2,476	0
백두대간 거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전환사업)	368	367	0	1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잔도길 조성사업	2,608	126	2,474	8
산림레포츠파크 지역특화형 숲속의집 조성사업(기초계정)	1,200	1,192	0	8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 용수개발)(전환)	1,596	83	1,513	0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전환)	9,401	115	9,286	0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1,748	343	1,347	58
신활력플러스사업	5,455	2,140	3,315	0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2,460	1,360	1,100	0
기초생활거점육성(가북면)	4,219	743	3,476	0
기초생활거점조성(농촌협약-마리면)	285	85	200	0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공간정비사업	6,250	5,684	566	0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촌협약-거창읍)	603	112	491	0
기초생활거점조성(농촌협약-주상면)	285	82	203	0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9,212	7,420	1,792	0

- 2023년도 <u>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 상황</u>은 총 <u>18건에 29,268백만원</u>이며, 일반회계는 17건에 21,848백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건에 7.420백만원임.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그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18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타당함.

6) 예비비 지출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 출	기초애	USION	기위기에
조 직	단 위	세부사업	결정액 기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1건	6,218	4,221	912	1,085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3	3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12	12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197	197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1,168	1,168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10	10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370	370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93	93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22	22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40	40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108	108	0	0
보건정책과	공공의약 관리	공립요양병원운영	90	90	0	0
안전총괄과	재해대비	소규모 재해해소	133	133	0	0
산림과	산림생태 보호	7.9.~7.19. 호우피해 재난복구	1,294	64	596	634
건설교통과	소규모 지역개발	호우피해 재난복구	937	879	34	24
건설교통과	하천 정비	하천 유지보수사업	393	0	282	111
농업축산과	농촌복지 인프라 구축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195	189	0	6
농업기술과	고식미 생산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330	165	0	165
농업기술과	고식미 생산	농작물 냉해피해농가 복구지원(도비)	597	593	0	4
농업기술과	고식미 생산	농작물 우박 피해 농가 복구지원(도비)	34	33	0	1
농업기술과	고식미 생산	6월 우박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원	29	27	0	2
농업기술과	농산물마케팅고도화	공동선별공동계산 지원	163	25	0	138

-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지출결정액은 총 <u>21건에 6,218</u> <u>백만원</u>이며, 그 중 4,221백만원을 지출하고 912백만원은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5백만원임.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u>보건정책과의 공립요양병원운영은 군 직영</u>에 따른 지출이며 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소관 지출은 호우 피해와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난에 따른 것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됨.

7) 다음연도 이월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고
계	306	596,090	170,978	
명 시 이 월	106	231,704	73,943	일반회계 94건 댐주변지역특 1건 상수도특 7건 하수도특 4건
사 고 이 월	164	281,097	55,808	일반회계 154건 산업단지 1건 상수도특 6건 하수도특 3건
계속비이월	36	83,289	41,227	일반회계 32건 산업단지 1건 하수도특 3건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해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다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기간 미도래, 보상지연, 설계변경, 행정절차 지연, 기본계획 미확정 등의 사유로 이월됨.
- <u>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사례의</u> 경우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이월을 최소화 하기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 계속비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기금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기금명	조성액 ②	계()=(0)-(0)	조 성 액⊕	사용액@	조성액 (@=⑦+@)
계(9종)	148,624	△54,091	4,173	58,264	94,533
식 품 진 흥 기 금	134	△1	50	51	133
중소기업육성기금	5,676	△539	100	639	5,137
사 회 복 지 기 금	2,465	59	91	32	2,523
재 난 관 리 기 금	3,400	84	796	712	3,484
아림예술제진흥기금	502	11	15	4	513
옥외광고발전기금	578	△242	66	309	336
체 육 진 흥 기 금	1,103	0	17	17	1,10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4,766	△53,930	2,570	56,500	80,836
고 향 사 랑 기 금	0	468	468	0	468

- 2023년 고향사랑기금이 신규로 조성되었으며, 2023년도 현재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은 148,624백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173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8,264백만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4,533백만원임.
- 기금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함.
- 거창군 기금은 <u>최근 5년간 평균 83% 증가</u>하였는데 이는 <u>통합</u> <u>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증가</u>에 기인 한 것임.

-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안정화 기금에 편성하여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 <u>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감소액이 539억원</u>인데 신규 대형사업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u>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u> <u>부족한 재정 충당으로</u> 보여짐.
 - <u>기금은</u> 조성보다는 <u>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u>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u>아림예술제진흥기금</u>, 체육진흥기금은 <u>집행이 미미하므로 향후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집행 노력</u>이 필요함.

9) 채권액 결산

○ 회계별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4,260	3,078	2,639	4,699
일반회계	2,728	78	304	2,502
특별회계	1,522	3,000	2,325	2,197
농업발전기금	1,522	3,000	2,325	2,197
기 금	10	0	10	0
사회복지기금	10	0	10	0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260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078백만원이 발생하고, 2,640백만원이 소멸하여 439백만원이 증가한 2023년도말 현재액은 4,699백만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u>기금채권 10백만원, 보증금채권 133백</u>만원, 융자금 채권 4,532백만원, 기타채권이 34백만원으로 보증금 채권은 콘도 회원권이고, 융자금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주택 융자이며, 기타채권은 행정소송 승소금임.

10) 채권액 결산

- 거창군의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0원임.
- 2018년도 이후로 채무가 0원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11) 보조금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수 령 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85,849	388,320	306,421	67,270	14,629
	일 반 회 계	376,466	378,937	297,071	67,270	14,596
특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0	30	30	0	0
별 회	의료급여기금	170	170	166	0	4
_, 계	수질개선	9,183	9,183	9,154	0	29

- <u>2023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388,320백만원</u>으로 예산액 385,849백 만원이고, 집행액은 306,421백만원, 이월액 67,270백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14,629백만원임.
- <u>보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군비부담액은 144,807백만원으로 총</u> 사업비 대비 37.3%에 해당됨.

전체심사의견

- 재정 운용 기본방향은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성과 창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최대 확보,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강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와 안전 환경 조성으로,
-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 전략적 예산확보와 효율적 재원투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군정발전 전략추진, 지역경제 살리는 효율적인 재정회계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음.
- 2023년도 총 세입액은 1,143,462백만원, 총 세출액은 830,573백 만원으로 잉여금은 312,889백만원임. 세입대비 27.3%가 집행 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재정 계획과 재원 배분에 다소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것임.
- <u>총 세입은 1,143,46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1백만원이 감소</u>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 실제수납액 기준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u>지방교부세 308,659백만원(34.3%)</u>이고, <u>보조금 234,132</u> <u>백만원(26.0%), 조정교부금 33,553백만원(3.73%)</u>, 지방세는 39,970백만원(4.5%), 세외수입은 28,425백만원(3.2%)으로

- 우리군 재정은 <u>자체재원(7.6%)보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u> 등 이전재원(64.2%)의 비율이 8배 가량 높음.
- <u>세출은 830,57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095백만원이 증가</u>하였으며, 일반회계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157,919백만원, 사회복지 147,475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70,645백만원 순이며.
- <u>전년대비 가장 많이 금액이 증가된 것은 교육(47%)</u>, 문화관광 (34%)분야이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32% 감소하였음.
-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의 사업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재검토를 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나머지 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94,533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173백만원임.
- <u>거창군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83% 증가</u>하였는데 이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증가에 기인한 것임.

- 당해년도 조성액은 4,173백만원이고, 사용액은 58,264백만원 으로 <u>기금조성에 비해 사용액이 54,091백만원이 더 많으며,</u> 이는 <u>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u> 되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임.
-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 자금을 보유·운용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지방세 결손처분이 전체 1,270건 675백만원으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평가액 부족, 토지 공매 배분금액 부족 등의 이유로 정리 보류하였으나 평가액 부족과 무재산 이유가 대부분으로 대체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시효로 소멸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총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3.2%로 매우 양호하며 특히,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은 그 비율이 95.1%로 수납 비율이 양호하나, 세외수입은 지방세수입과 비교해 볼 때 순 수납액 비율이 90.6%로 상대적으로 낮음.
- 특히, 세외수입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징수율이 74.6%로 매우 저조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함.

- 2023년 일반회계 사업에 <u>예산불용액 과다발생분은 사업별</u> 집행계획을 자세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u>보조사업비 반환금도 지난해에</u>이어 증가 추세여서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 등 29건 415백만원을 미집행하여 불용 액이 발생된 것은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써 향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시 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거창군에서 수립한 <u>성과계획서</u>를 검토한 결과 <u>전략목표 24개,</u> <u>정책사업목표 79개 추진을 위한 217개의 정책(성과)지표를 설정</u>하고 정책지표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나
- 특별한 노력 없이 목표 달성이 가능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 방 법이 타당하지 않은 목표치를 설정한 지표가 확인됨.
- 또한 <u>예산을 수반하는 신규·특수·역점·현안사업은 반드시 예산의</u> 성과계획서를 작성, 성과보고서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209개 예산사업 중 미래교육도시 거창 마스터 플랜 수립 등 9개 사업은 성과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음.

★ 성과계획서 미작성 현황

연번	부서명	사업유형	사 업 명	비고
1	인구교육과	현안·역점	미래교육도시 거창마스터 플랜 수립	
2	경제기업과	신규특수	거창군 기업정보 홈페이지 구축	
3	경제기업과	현안역점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4	문화관광과	현안역점	가북면 용산숲~우혜마을 트레킹길 조성사업	
5	복 지 정 책 과	현안역점	에코워싱(ECO WASHING) 일회용품 이젠 그만!	
6	안 전 총 괄 과	신규특수	2023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7	산 림 과	신규특수	가로수 테마전정 시범사업	
8	행복농촌과	신규특수	건강한 청소년 식생활 문화 조성	
9	거창사건사업소	현안역점	방방곡곡 거창사건 역사공감 홍보	

-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의지와 노력 등이 반영된 합리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근 거를 명시하여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성과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성과계획서도 동시에 변경하는 절차를 준수하기 바람.
- 성과보고서 검토결과 <u>217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성 25개, 초과</u> <u>달성이 24개 확인</u>되었음
-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3개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환류하는 제도로 성과지표 및 목표치설정 시에는 사업목적과의 연관성과 결과 중심의 적성성, 목표수준의 합리성에 역점을 두고,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되, 달성이 불가능한 지표를 설정하여 미달하거나 목표를 낮게 잡아 초과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기 바람.

- Ⅲ 질의 및 답변 : 생략
- Ⅳ 토론요지 : 해당없음
- ∨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6.24.)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고 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종합평가

- □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까지 9일간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 □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사업비 집행현황,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 등을 공통감사 사항으로 하고, 부서별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총 227건에 대하여 시정 및 지적 요구하였음.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감사를 하는 자리였음.
- □ 위원님들도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군민의 목소리를 군 정에 전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 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
- □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주요 내용은
 - 용역 사업 관리 철저
 - 지역과 상생하는 행정의료타운 조성
 -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 발굴 철저
 - 화장장 건립 추진 박차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철저
 - 창포원 국가 정원 도약 차질 없는 준비

-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사후관리 및 자체사업 추진 검토
- 교육발전특구 공모대비 철저
- 승강기 제2시험타워 준공 및 도시브랜딩 사업 적극 대응
- 아트갤러리 건립사업 추진 철저
- 산림레포츠파크 개장 준비 철저
- 시내버스 공영제 타당성 검토
- 주민편익사업 우선순위 선정 기준 마련
- 농기계 배달서비스 방안 검토
- 농촌협약 및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철저
- 거창푸드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내 마을상수도 일몰제 조기 시행
- 국민체육센터 인력 등 운영 철저
- 체육시설 확충 시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철저 등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고, 개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음.
- O 이번 감사 결과 각 분야별 지적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지적하였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요구한 396건의 주요감사대상 항목 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치 및 요구하였음.

Ⅱ 감사실시 경과

○ 감사기간 : 2024. 6. 12. ~ 6. 20. (9일간)

O 감사장소 : 거창군청 대회의실

O 감사시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비고
김향란 의원	최준규 의원	표주숙 의원, 이재운 의원, 신중양 의원, 신미정 의원,	박수자 의원 김홍섭 의원	최영미	고 영 운 정 현 정 전 형 성

* 배석 : 박혜진, 전병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배기정, 박재영, 정현주, 박홍선, 백수연)

O 감사범위: 2023. 5. 1. ~ 2024. 4. 30.

* 군정업무 전반, 업무의 연관 및 연속성을 감안 지난 연도 업무 소급감사

○ 감사대상 : 전 국·담당관·과·소 · 읍·면

O 감사근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Ⅲ 감사결과

O 시정 및 지적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 227건

※ 신분상·재정상 조치 요구사항 : 없음

Ⅳ 감사결과 처리 의견

O 시정 및 지적에 대한 요구사항 조속한 처리

O 부서별 시정·지적사항 현황 : 227건

부서명	시정·지적 현황(건수)	부서명	시정·지적 현황(건수)
741		안전총괄과	7
계	227	산 림 과	14
기획예산담당관	10	환 경 과	12
전략담당관	7	건설교통과	19
행정국	34	도시건축과	12
행정과	9	농업기술센터	39
인구교육과	17	농업축산과	13
민원소통과	4	농업기술과	15
재 무 과	4	행복농촌과	11
경제복지국	41	보 건 소	10
경제기업과	9	보건정책과	7
문화관광과	13	건강증진과	3
복지정책과	8	수도사업소	7
행복나눔과	11	체육시설시업소	13
안전건설국	64	거창사건사업소	2

O 부서별 시정·지적에 대한 요구내용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① 용역사업 관리 철저	 ○ 용역이 완료된 자료는 공개하여 부서 간 소통과 연계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연구용역에 막대한 용역비가 들고 있음. 기술용역도 한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연구용역 후사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활용에 철저를 기하기바람. ○ 용역비 절감 방안 마련과 면피용 용역은 지양하기 바람. ○ 공모사업에 선정되려면 수준 높은 용역업체를 통한 내실 있는 계획이 중요한 요소로 우리 군의 경우 수의계약이 많고 경남도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음. 전략·학술용역 중 중요 용역은 용역비를 증액시켜서 수준 높은 용역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특화된 용역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계약 시 활용하기바람.
기 획 예 산 담 당 관	② 관내 택시 및 버스 랩핑 광고 개선	 ○ 관내 택시 및 버스를 통한 홍보 내용에 변경이 필요해 보이며, 관내 정책 중 군민이 관심 있는 분야, 주정차 등 시민 질 서의식 계몽, 출생·육아 한시적 지원 정책, 농특산물(산양삼 등) 홍보, 군민 자부심 고취 등 다양하게 검토 바람. ○ 택시, 버스 광고 내용에 자매, 결연도시 간 상호 홍보방안 마련 검토 바람. ○ 양측면에 다른 광고내용을 홍보하여 홍보효과 제고 바람.
	③ 주민참여 예산 운영 개선	 ○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축제성 예산 등이 대부분이며 본 사업과 적합하지 않은 예산들도 있음. 생활밀착형 예산 발굴이 요구됨 ○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소셜네트워크(SNS 등)를 통한 의견수렴 등 다양한 사업발굴이 필요해 보이며 많은 주민(청년주도형 사업의 경우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있도록 홍보와 주민 의견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실효성있는 제도 안착에 필요한 노력이 요구됨. ○ 주민참여예산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우수사례가 있으므로주민자치회 예산 편성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하고,편성 기준 마련과 교육 등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주민자치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④ 자체감사 철저	 ○ 상급기관인 국무조정실 감사 지적사항이 1건 있었음. 자체 감사로 예방될 수 있도록 감사업무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갑질이나 성 문제 사실 인지 시 즉시 감사권을 발동하여 감사부서의 기능을 다해주기 바람. ○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똑같음. 법인카드, 공사 분리 발주, 경로당 공사, 경로당 운영비 등 해마다 똑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 간인계인수나 교육 등 철저한 관리로 개선조치 바람.
	⑤제안제도활용도 제고	○ 자매도시를 통한 제안제도 활용방안도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⑥ 거창아트갤 러리 건립 사업계획 변경 검토	○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거창아트갤러리가 재검토로 결정되면서 많은 주문사항이 있었으며, 미술관은 군에서는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업임. 거창하게 사업을 할 게 아니라 폐교, 농협 창고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특색 있는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바람.
	⑦ 재정 확충 노력 강구	 ●관광인프라 확보와 스포츠 마케팅, 각종 행사 유치 등으로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으나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함. 부족한 숙박시설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민자유치 방안마련이 시급하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민자유치관련 인·허가 규제 완화 방안도마련하시기 바람. ●관광인프라 사업이 향후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민자 유치노력이 요구됨. 기존 관광인프라가갖추어진 곳에 추가 체험시설, 레저시설 등의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관광객의 재방문 유도에 필요한 사업발굴 및 민자유치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람. ○ 군수 공약사업에 예산 1조 원 시대 도약이 있으나 정부예산이 삭감되고 있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300억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2025년도예산 재원확보 방안마련이 시급함, 재정 수입을 늘릴 수있는 부분과 세출을 줄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세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2025년 예산이 편성될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시기 바람. ○ 예산낭비 신고센터 홍보 방안 강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⑧ 위원회 관리	○ 위원 한 사람이 3개 위원회까지만 중복 위촉 가능토록 검토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위원 인재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인재 확보 방안 마련, 자문 인력과 인재풀 연계 관리 검토
	⑨ 보조금 관리	 ○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행사로 인해 확보한 인센티브를 보조단체에 다시 사업비로 집행한 부분이 있었음, 전반적인 기준 마련 등을 보완해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람. ○ 동일한 행사비에 행사내용은 읍・면마다 차이가 많음, 보조사업을 평가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기 바람.
	⑩ 감사자료작성 철저	○ 감사자료 비고란을 활용하여 참고할 수 있는 상세 설명 표기 토록 조치바람.
	① 거창구치소 관련	 ○ 거창구치소에 거창농산물이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가족이 군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유치 당시 예상되었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시기 바라며, 인센티브 관련 사업 추진 시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체육시설 등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법조타운 인근 주민 편의시설 주차장, 주민 여론 수렴 후 위치를 선정하기 바람.
전 략 담 당 관	② 행정의료타운 조성 관련	 ○ 행정의료타운 내 상가, 주거지역 포함 시 도심 공동화가 우려되므로 필수시설로 한정해서 추진해 주기 바람. ○ 지방소멸대응기금 S등급 받은 곳을 보면 한 곳에 대형사업으로 집중 투자한 곳임. 인구 유치에 필요한 사업들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군도 행정의료타운 내 근로자 기숙사 사업 등을 연계해서 집중투자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행정의료타운 조성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행정절차 이행 등 다각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산후조리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등 시급한 사업을 먼저 추진하시기 바람. ○ 의료복지타운 내에 청년, 근로자,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아파트 확보 방안 검토, 임대아파트 확보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③ 고향사라기부제 적극 대응	○ 고향사랑 기부제에 지정 기부사업 발굴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화장장 건립사업에 지정 기부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자 관리 철저
	④ 지방소멸 대응기금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추진 시 실효성 있는 정주인구 유입 사업으로 방향성 전환 검토
	⑤ 드론자격증 활용 방안 및 교육 프로그램 확보	○ 드론 자격증 활용사례 연구로 활용방안 마련 검토 바람. 드론 관련 체험, 교육사업에 요구가 많음, 여름, 겨울 방학 이용 등 사계절 강좌(드론 코딩 등) 실시 방안 마련.
	⑥ 공공형 계절근로자 활용 및 관리 철저	 ○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시까지 공공형 근로자들이 북부농협 월천체험마을에서 숙식하고 있으므로 북부농협 소속 농가가 우선 활용할 소지가 있음, 각 지역 농가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기숙사가 건립되면 저녁 시간 관리방안 마련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계절근로자 사용 농장주 교육 추진바람.
	⑦ 화장장 건립 추진 철저	 ○ 화장장 건립부지 2차 공모 신청한 마을 중 미지정된 7개 마을에 군정 시책에 적극 협조함에 따라 주민복지 예산을 편성하여 마을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화장장이 가칭) 거창화장장으로 불려지고 있어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명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화장장 신축을 위해 국비 예산 70%를 확보하였으나 실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실에 맞는 공사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고 3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설공원 묘지 내 분묘 사용기간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필요해 보임. ○ 평생장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상위법 개정 건의 등으로 거창군에서 선도적으로 평생장지를 추진하고 수목장, 자연 장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검토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 인센티브 사업들에 대해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① 공무직 근로자 교육기회 제공 검토	○ 공무직 근로자들도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기 바람.
	② 창포원 담당과 신설 검토	○ 거창창포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전담 과나 사업소 신설을 검토 바람.
(F	③ 공무원 역량강화 등 복지 관련	 ○ 공무원 역량강화에 200명의 대규모 인원으로 추진 시 항공편, 식당, 숙소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주제별, 테마별로 3~4개 팀으로 나눠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라며, 방문지역도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기 바람. ○ 신규 공무원의 경우 최저시급도 안 되는 월급이므로 처우 개선이 필요해 보임, 중앙정부 건의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거창군 직원들이 이용하는 자율 휴양시설의 경우 콘도별 이용실적에 따라 저조한 콘도는 회원권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④ 공무원 정원 등 관리 철저	 ○ 거창군은 정원에 비해 결원이 48명으로 주로 면단위에 결원되어 있고 가조면의 경우 인구와 농지면적 등이 타 읍・면에 비해 배 이상 많음으로 인해 업무량이 과다함. 결원이 없도록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EM사용 증가, 농약안전검사 증가, 농산물 관련 각종 인증업무 증가 등으로 업무량 배가됨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됨. 전문성을 갖춘 직원 충원이 필요하므로 업무분석 후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다양한 인력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국도비 확보 등을 위해서 도나 중앙부처로 전출 및 파견 가는 인력에 대한 활용 방안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금원산 등 관내 상급기관 직원에 대한 관리도 추진해 주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 농기계 담당 인력이 현재 4명으로 부족한 실정임. 공무직이 아닌 기간제 모집으로 응시자가 없음, 응시 자격으로 농기계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사고위험도 상존하고 있어 공무직 인력을 확보하도록 추진해 주기 바라며 기존 인력의 공무직 전환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공무원 정원 부족, 전체 정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음,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7급 이하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임. 전체 공무원을 인구수에 대비해 보면 타 시군에 비해 직원이 부족한 실정임.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잦은 전보는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행정의 연속성, 업무연찬 등을 위해 인사 원칙을 지켜주기 바람.
	⑤ 관광 전담부서 신설 검토	 ○ 관광 관련 관리부서가 산재되어 있고, 군내 관광지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 홍보가 부족함. 산재된 관광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거창군은 관광 전담이 1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나, 타시·군은 관광 전담 부서가 있고 통영의 경우 관광혁신국이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도 전담부서의 신설을 검토하기 바람.
	⑥ 이장 연령제한 검토	○ 이장 연령제한이 필요해 보임,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연임 조항과 연령 상한선을 정해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마을자치규약 준칙 표준안 사용 안내와 독려 철저
	⑦ 무인민원 발급기 활성화	○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 실적이 적은 지역(코아루)은 이전 (축협하나로마트)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8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 발굴	○ 북한 이탈주민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일반 군민 상대 홍보 사업은 부적절해 보임, 이탈주민에게 행정 추진사업 등의 안내책자 배부나 종합검진, 취업 연계 상담 등 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시기 바람.
	9 새마을지도자 활동비 자원검토	○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활동비 및 수당 등 지원 검토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① 글로컬 대학 지정 대비	○ 글로컬대학 선정 관련하여 창원대학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글로컬대학 선정 시 학과 통폐합 추진에 있어 거창 대학의 간호학과를 비롯한 주요 학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람
	②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사후 관리 및 자체사업 추진 검토	 ○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입주한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주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LH와의 협약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빈집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정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인 구	③ 평생학습축 제 운영 문제점 해소방안 강구 등	 ○ 평생학습축제 운영에 있어 무더위와 재료 조기 소진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 강구. ○ 평생학습축제 시 쓰레기 분리수거, 1회 용품 미사용 등은 좋은 시책으로 한마당 축제로 확대 추진 협의 바람.
교 육 과	④ 작은 도서관 운영 점검	○ 작은 도서관 13곳 중 새마을문고는 3년째 휴관 중으로 새마을단체 평가에 가점이 있다는 이유로 그냥 존치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휴관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⑤ 청년정책 추진방향 개선 등	 ○ 청년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 청년들과의 소통, 공감대 형성에만 그치고 있으므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증가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일자리 확보정책에 집중해서 청년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경우까다로운 지원조건으로 인해 대상이 적음, 청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창형 월세지원사업을 검토 바람
	⑥ 경상남도 조부 모 손주볼봄 지원조례 대응 철저	○ 경남도의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조례 제정에 대응한 거창 형 손주볼봄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⑦ 월성청소년 수련원 운영 개선 및 방문객을 통한 거창홍보	 ○ 월성청소년수련원에 많은 청소년들이 찾고 있으므로 방문학생들에게 거창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월성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금액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가필요해 보이며 많은 군비가 지출되지만 관내 청소년들에게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우주창의과학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
	⑧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시간조정 검토	○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상담사 운영시간과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의 상담 가능 시간이 맞지 않아 보이므로 시간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9 명문대 비대면 지원사업 개선 검토	○ 명문대 비대면 지원사업을 보면 명문대 등 진학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학생과 학부모 수요조사 를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하고 학습과 입시 위주가 아닌 전문성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⑩ 교육발전특 구 공모대비 철저	 ○ 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에서 지정되지 못한 원인으로 거창 교육발전의 비전과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거창군의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기 바람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대응에 승강기 고등학교, 한국승강기대학, 승강기산업을 연계한 교육발전 특구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①한마음도서관활성화	○ 한마음도서관 야간도서 대출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관내 서점과 한마음도서관과 연계한 주민 희망도서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②거창군장학회운영	○ 거창군 장학회는 수기로 문서생산, 문서등록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해 보임.
	13	○ 도립거창대학 평생교육원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타 지역민도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평생교육원 운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생활인구 유입차원에서 검토해 주기 바람.
	④마을강사모집 인재풀관리	○ 미래교육지구 마을강사 모집에 귀농·귀촌인, 퇴직공무원 등을 이용한 인재 발굴 및 인재풀 관리로 활용방안 마련 검토.
	⑤초등학부모10시 출근제검토	○ 광주광역시에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행하는 중소 사업장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거창군에서도 도입하는 방안 검토.
	⑥ 스마트도서관 비활성화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 스마트도서관 설치 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치장소를 결정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이전설치를 검토 바람.
	(17) 가조승강기 고등학교 특성화 고교 추진	○ 특성화 고교에 선정되면 30억 지원금과 전국 단위 정원 180명 모집이 가능함. 가조승강기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
민 원 소 통 과	①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납액 관리	○ 지적 재조사 조정금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전 단계 에서 철저한 설명과 당사자 간 의견조율 등이 선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② 위생업소 등 지원 및 관리	 ○ 청소년 주류판매에 있어 주민등록증 위조 등 선의의 피해 자에 대한 구제방안 검토 바람. ○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추가 수요가 있으므로 수요조사 후 사업 추진 검토. ○ 연극 프로그램을 통한 위생교육이 만족도가 높으므로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격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연극고등학교와 협업도 고려하기 바람. ○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후 점검결과 작성할 것. ○ 음식점 위생등급평가제 평가항목은 까다로우나 혜택은 적음, 지정 시 혜택을 늘려 많은 업소가 신청할 수 있도록조치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③ 정보공개 원문공개율 제고	○ 거창군의 정보공개 원문공개율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낮은 편이므로, 부서별 원문공개율을 평가하고 비공개 문서에 대해서는 비공개사유가 적합한지를 검토해서 공개 가능한 문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문공개 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바람.
	④ 부동산 중개 업소 지도· 점검 철저	○ 공인중개사 도장 임의 도용,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등과 관련한 중개업소 지도·단속 철저
재 무 과	① 공유재산 및 정수물품 관리 철저	 ○ 정수물품 교체 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폐기하지 말고 공개매각하거나 주민에게 재활용하는 방안 마련. ○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대부료 체납 일제정리 추진. ○ 공유재산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의향조사 후 매수신청을 받아 매각하는 등 정리할 것.
	② 물품 렌탈업체 편중 시정	○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물품 렌탈에 있어 특정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재무과에서 총괄 파악해서 한 업체에 편중하지 않도록 관리 바람.
	③ 건설공사 등 계약관리 업무 철저	 ○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하도급 제한 위반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수의계약 시 시공능력 검증, 건설현장 관리 등 철저를 기하여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공사계약 관련 불법적인 관행을 바꾸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할 것. ○ 수의계약의 특정업체 계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개별 기관별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 시행 효과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 바라며, 부서별 수의계약 관리담당자 지정과 수의계약 사유서 첨부 등 관리체계 구축으로 특정업체 편중 해소방안이 필요함. ○ 또한 불참여 업체와의 의견 소통으로 문제점 및 대책을 도출, 발주 시 의견을 반영하고 분리발주는 예외로만 실시토록 조치 바람. ○ 음향업체 관련 사업발주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④ 공용차량 관리	 ○ 군수, 부군수 공용차량은 정부기관 방문 등 장거리 출장이 많으므로 내구연한 도래 전이라도 차량상태 불량 등 교체 필요성 발생 시 교체할 수 있도록 관리 바람. ○ 재무과에 있는 공용차량을 부서에서 이용하려면 배차신청 등 불편사항이 있는 바 차량 수요가 많은 부서에 추가 배치 검토바람.
	① 공약사업 효율적인 추진	○ 경제기업과 소관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있어 현실적으로 공약이행이 어렵거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사업중단 검토.
	② 거창 청년몰 관리	 ○ 지역 청년단체와 연계 및 소통을 통한 청년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생관리 철저, 옥상공간 정비 후 개방 추진할 것. ○ 빈 점포 입점 대상자 선정 시 자격을 강화하고 지원을 통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메뉴와 경영으로 특색 있는 청년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경	③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 철저	○ 사업계획 단계에서 세밀한 검토와 계획 수립으로 국·도비 반납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추진 바람.
제 기 업 과	④ 승강기 제2시험타워 준공 및 도시브랜딩 사업 적극 대응	○ 시공업체의 시공능력 문제 및 공사비 증액 등 사업 지연으로 준공 차질이 우려되고 사업이 지연될 경우 연계사업인 도시브랜딩사업도 함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승강기관리공단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⑤ 전통시장 관리 철저	○ 시장화재는 한 점포 화재로 끝나지 않고 시장 전체가 화재 위험에 놓이게 되므로 전선 관리 등 화재 예방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⑥ 사회적 기업 예산지원	○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이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음, 갑작스러운 예산삭감이 현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군비를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줄여 자생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⑦ 기업유치 홍보영상 제작 철저	○ 기업유치 홍보영상에 사원주택 건립부지 지원, 이주 시 주민 혜택 등 실질적으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홍보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제작해 주기 바람.
	8 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조치사항	 ○ 도시가스 공급 대체방안으로 소형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조에는 식당이 많고 가스 사용량이 많으므로 150세대에서 1,000세대에 필요한 중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검토 바람. ○ 거창읍내에 도시가스 사업 후 방치된 가스저장탱크 철거와 기존 주민들이 사용하던 가정용 LPG가스통도 실태 파악 후 처리방안 마련 요청.
	⑨ 일반산업단 지 관리 철저	 ○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을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추진 바람. ○ 일반산업단지 건폐율 60%로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70~80%인점을 고려해 보면 건폐율 상향이 필요함, 증·개축을 필요로하는 기업의 건폐율 상향 건의도 많으므로 변경될 수 있도록조치 바람. ○ 입주 기업들의 인력 수급문제와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 등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기적 간담회 등 소통 노력으로 유치한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후 조건 미이행 시 환수에 대한방안을 꼼꼼히 마련하고 군비가 낭비되지 않게 보조금 환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문 화 관 광 과	① 거창한마당 축제 보완	 ○ 거창한마당축제가 매년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바라며, 청년존도 안쪽에 위치해 야간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무대 이설 검토. ○ 축제 시 먹거리가 다양하지 못하고 가격은 비싸고 양은 적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보완해서 추진하기 바라며, 외부음식점 운영 공간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 검토. ○ 축제장 근처 소음 민원에 대한 사전 협조 요청으로 민원 최소화. ○ 거리퍼레이드에 보조단체 등 단체 참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거리 퍼레이드 참여, 국외 자매도시 연계 방안 검토 ○ 초청가수 공연 시 팬클럽 회원들로 인해 군민들이 앉을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② 가조온천지구 시설보완 및 축제	자리가 없음. 군민 전용 좌석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초청가수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화합형 축제보다는 특화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검토해 주기 바람. ○ 군민체육대회 시 고령화로 인해 선수선발에 애로가 있으므로 고령화에 따른 종목 추가 · 변경 검토 바람. ○ 가조 온천지구 황화 코스모스 홍보 철저 ○ 족욕장의 경우 빛 가림 시설 등 시설 보완을 검토하기 바람 ○ 가조온천지구 입구 무허가 건물 관련 소송 재검토와 대부 계약 관련 검토 등 주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홍보 ③ 88고속도로 폐도 및 폐터널 자원화 방향	바람 ○ 옛 88고속도로 폐도 및 폐터널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에 있어 아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공모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용역발주 검토
	④ 목재문화체 험장 관리	목재문화체험장을 활용해서 군내 관광지에 목조조형물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 검토.
	⑤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리	 ○ 수승대 국민관광지는 명승지로써 자연유산임을 생각할 때 야간조명 설치는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필요. ○ 수승대 무병장수 둘레길에 자연 친화적인 맨발 걷기 길 조성 검토
	⑥ 문화재단 운영 개선	○ 문화재단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와 자율성 부여를 검토토록 하고 공석인 2 단장에 연극전문가로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을 보충할 것
	⑦ 아트갤러리 추진 철저	○ 아트갤러리 투자 심사 시 재검토로 결정되었는데 사업내용 전달과 설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⑧예술단체 지원및 실내공연장 확보	○ 거창풍물패 연합이 문화예술단체로써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관내 여러 행사에 활동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원금이 모자라는 실정으로 증액 검토 바라며, 관내 실내 공연장이 부족하므로 공연장 확보 방안 마련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9 거창국제연 극제 공연장 개선 등	 ○ 국제연극제 프린지 공연 시간이 오후인 관계로 더위로 인한 공연 관람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국제연극제 조직위원장 위촉에 있어 거창국제연극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로 위촉하기 바람
	⑩ 거창관광택 시 활성화	○ 거창 관광택시 이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고 관광택시 기사들에게 관광지 안내 및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거창홍보와 관광 효과를 높이기 바람.
	①연극예술복합단지 조성방향성 제시	 ○ 연극예술복합단지 건물 신축 후 소프트웨어 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철저를 기할 것.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축물이므로 연극에 대한 상징성이 반영된 특색 있는 건축물로 조성토록 하고,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한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⑩ 전통사찰 보수정비 철저	○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있어 위치적으로 난공사 구역이 많으 므로 안전사고에 적극 대비하고 예산편성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람.
	③ 면우 곽종석 전시관 활성화 방안 마련	○ 면우 곽종석 전시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음, 홍보와 프로 그램 개발을 통해 방문객 증가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방 문객 증가 시 해설사 상주 방안 검토.
복 지 정 책 과	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동행인 추가 배치	○ 보훈단체 회원들이 고령이므로 전적지 순례 시 동행인 추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
	② 공유냉장고 관리 및 급식잔식 기부방안 마련 검토	 ○ 공유냉장고에 필요한 반찬 제공을 위해 거창군청 급식 잔식 기부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시범 실시 후 효과에 따라 확대실시 검토. ○ 공유냉장고 식품 유통기한 관리 철저.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③ 종합사회복 지관 운영 철저	○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은 가형 사회복지관으로 복지관 내 어린이집 이전으로 공간이 확보되었으니 정상적인 복지관 기능을 살리고 부족한 인력 확보 검토.
	④ 에코워싱 사업단 환경개선	○ 에코워싱 사업단 환경이 열악하고 휴식 공간이 없으므로 개선토록 조치.
	⑤ 꾸러기 천사 점빵 운영 관련	○ 꾸러기 천사 점빵에 대한 호응도가 좋으므로 면단위 확대 운영 방안 검토, 재방문 등 관리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홍보 위주로 교육효과를 높이기 바람.
	⑥ 국가유공자 관리	○ 국가유공자 효도권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잔액 부분 등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방법 모색, 조례를 개정해서 85세에서 80세로 대상 변경 검토
	⑦ 자원봉사자 감면시설 홍보	○ 관내 시설 중 자원봉사자 감면 대상 시설들이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감면을 못 받고 있으므로 홍보 철저.
	8 공동육아나 눔터 공간 확보	○ 공동육아나눔터 장소가 협소하므로 확장 또는 신규 설치가 필요하나 행정의료타운에 신축 예정으로 우선 복지관 어린이집 이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행 복	① 아동친화도 시 인증 관련	○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있어 실질적으로 아동친화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그 일환으로 마을 주변 녹지공간이 있는 작은 놀이터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어린이들 이용이 많은 기존 아파트 놀이터에 대한 보수도 검토하기 바람.
나 눔 과	②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 설 운영 관련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에 지역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위탁운영 계약 체결 시 자체운영으로 운영비 부담에 대해 명확하게 명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③ 지역아동센 터 돌봄운영 늘봄사업과 연계	○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사업과 교육청 늘봄사업을 연계하는 방안 검토, 학교에 빈 공간이 많으므로 학교 건물을 이용해서 거창군에서 돌봄 사업을 추진해 보기 바라며,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돌봄 운영도 검토 바람.,
	④ 국공립어린 이집 이전설치 관련	○ 더샵 아파트 단지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2개소나 이전하는 것은 더샵 아파트 외의 지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법적 의무사항인 1개의 국공립어린이집만 이전 설치하고, 나머지 한 곳은 리모델링이나 신축으로 현 위치에 유지하는 방안 검토.
	⑤ 경로당 지원사업 관련	 ○ 경로당 지원사업에 있어 물품 등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포함하고 수요조사 후 예산 반영토록 조치 바람. ○ 경로당 의자 탁자 설치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경로당별 개별 발주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들을 묶어서 통합 발주토록 하고 견적가가 아닌 조달가로 추진토록 조치 바람.
	⑥ 장난감 은행 운영 관련	○ 장난감은행에 보유한 노후 장난감은 폐기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⑦ 이동목욕차 량 지원비 증액 검토	○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에 있어 사업량은 늘고 있으나 운영비와 인건비가 열악하므로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검토
	⑧경천공간부지 확보검토	○ 위기 아동·청소년들의 보금자리인 국농소 경천공간에 부지가 협소하여 건물 내 유휴부지가 없으므로 쉼터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검토
	⑨ 젠더폭력통 합상담센터 관리	○ 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는 2억 원을 지원받는 단체로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횟수를 늘려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⑩ 무연고 사망자 장례	○ 관내 무연고 사망자 장례 방안 검토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⑪ 장애인 관련 업무	 ○ 다목적체육관이 장애인체육회의 발족으로 많은 장애인들의 이용이 예상되는바 장애인 화장실 공간협소,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완하기 바람. ○ 장애인 일자리는 거의 단순 일자리로 장애인 중에 특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음, 특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마련 방안 검토 바람.
	① CCTV통합관 제센터 근무자 관리	○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는 군민의 사생활과 관련이 있는 만큼 근무자에 대해 직업윤리 교육 추진 바람.
안 전	② 군민안전보 험 보완사항 검토	 ○ 군민안전보험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사망보험 제외 등 보장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15세 미만의 군민에게 후유장애에 대비한 성형치료, 재활치료 항목 추가 가입 검토, ○ 군민안전보험 항목에 가스사고 상해사망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전기톱이 포함되어 상해 시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건의 바람.
총 괄 과	③ 스마트마을 방송 가입율 제고 등	 ○ 스마트마을방송은 마을방송 청취애로가 많은 읍지역을 위해 당초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홍보를 통해 가입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재난문자방송 발송 시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발송 자제
	④ 동천저류지 관리 및 시설보완	○ 동천저류지 가로수 터널 지하고가 낮으므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전정조치하고 주변 가로등이 어두우므로 시설 보완 검토.
	⑤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허가기준 강화	○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 시 계획 승인 단계에서 단지 내 가로등 시설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조치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⑥ 실종자 등 발생시에 대응한 매뉴얼 제작	○ 실종자 미귀가자 발생 시 지역별, 단체별 역할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작성 검토와 총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⑦ 가로등 관리	○ 가로등이 기준에 의해 설치되고 있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안전을 위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① 목재집하장 조속 추진	○ 목재집하장이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건립이 안되고 있으므로 부지확보 노력이 필요함.
	② 산양삼 축제 및 판매 활성화	○ 산양삼축제 자매결연도시 연계 추진바람.○ 중국산 산양삼 관내 판매 실태파악 및 대처방안 마련하기 바람.
	③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철저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경우 월평빌라 부근 숲 조성은 목적에 맞지 않아 보이므로 사업추진 시 목적에 맞게 추진 하기 바람.
산 림 과	④ 산림사업 관리	 ○ 산림사업의 경우 대형사업들이 산림조합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형평성 있게 계약업무 추진바람. ○ 산림사업 후 풀베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숲가꾸기 사업 후 잔가지를 처리하지 않아 산불위험 요소도 있으므로 현장 파쇄될 수 있게 추진 바람.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를 접근이 용이한 곳만 하고 있으므로 전량 자원화 방안 검토 ○ 숲 가꾸기 사업 등 조림사업과 연계하여 밀원수가 조림될수 있도록 추진 검토바람.
	⑤폐석산원상복구철저	○ 배왕석재 대집행복구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시 행정대집행으로 복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복구예치금 현실화 방안 마련할 것.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⑥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 스포츠파크 등에 밀식된 소나무의 경우 체육시설사업소와 협의해서 이식 관리되도록 조치바람. ○ 가로수 식재 후 물 주기 횟수를 늘려 고사목 발생 최소화하기 바라며 가로수 수종 선정 시 자연경관을 고려해서식재하기 바람. ○ 관내 가로수에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강전정 자제토록 추진바라며 군청 내 소나무 등에 담쟁이덩굴 제거 바람. ○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종선정이 되도록 명기하기 바람. ○ 가로수 보식에 기존 가로수와 크기가 맞게 식재될 수 있도록.조치바람. ○ 가로수 병해충 관리가 예찰, 예방 위주로 관리될 수 있도록조례의 방제법 규정을 지켜 주기 바람. ○ 군 전체 조경수 관리가 조경 전문직에 의해 조성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 시내 전선관리에 방해가 되는 가로수의 경우 강전정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⑦ 관광지 하절기 조기 개방 검토	○ 가조힐링랜드나 수승대 출렁다리 등 주요 관광지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있을 시 하절기 조기 개방 검토 바람.
	⑧마을정자목주변 데크설치사업사업방향전환 검토	○ 마을정자목 주변 데크 설치사업은 마을마다 대부분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마을이 많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체사업을 검토바람.
	⑨ 보호수 지정·관리 철저	○ 노거수 전수 조사를 통해 보존 가치가 높은 노거수를 발굴하고 보호수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⑩ 거창산림레 포츠파크 개장 및 운영 대비	 ○ 거창산림레포츠파크 마운틴코스터 소송에 있어 하자보수이행이 판결에 규정되도록 대응 철저. ○ 산림레포츠 개장이 연거푸 연기됨으로 인해 행정의 신뢰도가추락함, 사업추진에 있어 계획단계에서 철저한 검토 후추진하기 바람. ○ 마운틴코스터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은 연계방안이필요한 사업으로 개장을 앞둔 현 상황에서 생태교육장의활용방안이 미확정인 것은 부적절해 보이며 연계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거창산림레포츠파크 개장 시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역경제창출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시설지역 외에는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개발이 불가능함,향후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추진을 검토바람.
	① 항노화힐링 랜드 운영 관리	 ○ 항노화힐링랜드 내 공공 와이파이 설치 검토, Y자형 출렁다리 전망대의 철근구조물에 덩굴식물 식재로 미관 정비 바람, 잔도길 등 추진에 있어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 항노화힐링랜드 평일 숙박동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하기 바람.
	⑫ 건흥산 등산로 정비 추진	○ 건흥산 등산로 데크나 야자매트 등으로 일부 보호시설이 되어 있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구간들이 있음, 휴식년제 도입 등 등산로 주변 수목보호를 위한 조치 검토 바람.
	③임도를활용한산악자전거대회 유치	○ 호음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임도개설 완공 후 산악자전거 대회 유치 추진.
	④ 탄소배출권 판매사업 검토	○ 거창군 군유임야를 활용한 탄소배출권 판매사업 추진 검토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①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관련	 ○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은 신청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므로 시·군별 예산조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축사는 철거면적이 넓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개인부담금이 많아 철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 건의 등 대책 마련 추진
환 경	②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	 ○ 전기차 보급사업에 있어 승용차는 신청자가 많고 택시는 신청자가 미달되므로 택시 지원분을 승용차에 지원이 가능한지 경남도와 협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가정용 충전기 신청 저조하므로 공고에 그치지 말고 직접우편으로 사업을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전기자동차 보조금과 관련하여 2년 경과 매매가능 조항과지원자격 기준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의 기준 강화조치 바람. ○ 가조온천 지구 내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될 수 있도록조치바람. ○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자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확인
^경 과	③ 재활용품 선별장 환경개선 추진	 ○ 재활용품 선별장 근무인원 증원과 컨베이어벨트 증설을 검토하기 바라며 배출단계에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 교육방안 마련 추진할 것. ○ 재활용 선별장 근무자 연휴 근무일수 조정 등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람.
	④ 다회용기 사용 적극 추진	 ○ 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다회용기나 텀블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세척장과 연계하여 군청 공유컵 사업 추진 검토. ○ 한마당축제 시 음식부스에 다회용기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한국병원 장례식장도 다회용기 사용할 수 있도록 2층 승강기설치 방안 등 협의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⑤ 창포원 운영관리	 ○ 창포원 매점 및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에 있어 청년위주로 검토 바라며 거창군민으로 제한입찰도 검토할 것, 계약자와 운영자가 동일할 수 있도록 관리바람. ○ 창포원 야간 조명 설치사업 완공 시 주차료, 입장료 징수 토록 추진하기 바람. 창포원 진입로 유도표시선 검토 추진 바람. ○ 창포원 자전거 대여료를 현실화하고 부족한 자전거를 추가 확보 조치 바라며 주말과 평일의 대여료를 구분하여 평일 방문객 확보 방안 검토. ○ 창포원 잔디밭 행사장 비가림 방안 추진 검토. ○ 창포원에 민물 아쿠아리움(단양 민물 아쿠아리움 참고)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라며 강가 인근으로 상설수영장 신설을 검토하기 바람. ○ 맨발건기길 세족장이 협소하고 그늘막이 없으므로 조치바람.
	⑥하천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추진 철저	○ 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시 자격 요건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환경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실적이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환경교육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본 프로그램비 예산 확보해서 운영토록 할 것.
	① 거창생태공 원 유입 하천수 관리철저	○ 낙동강유역환경청 가동보 공사 중 관 파손으로 인해 거창 생태공원에 하천수가 유입되지 않아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신속한 처리방안 강구
	⑧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지원사업지속적 추진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바람.
	9 야생동물 피 햬예방시설 설치 시기 조정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전 피해가 있으므로 사업시기 앞당길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⑩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및 악취 저감대책 강구	○ 이동식 공중화장실 악취 저감대책 강구 ○ 위천천 시내구간에 화장실 설치 검토바람.
	① 황강취수장 설치사업 중단을 위한 대응 철저	○ 합천군과 연대하여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용역 추진 검토하고 계속 범대위 활동이 이루어져 언론보도를 통한 여론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대처 철저
	②시·군경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방안검토	○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여 경계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마련 검토
건 설 교 통 과	① 회전로터리 조성관리 관련	○ 아월교 회전로터리 신설에 있어 행정절차 추진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 사업추진 중에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② 마리~북상 간 도로 4차선 확장 추진	○ 마리~북상 간 4차선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정무적 접근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
	③ 농업 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면별 형평성 고려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농업용 암반관정 사업, 준영구 논두렁 사업 등이 면별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④ 시가지 등 관내 정비 관련	 ○ 만남의 광장에서 고속도로 진입 시 애로가 있으므로 회전 교차로를 통해 유턴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강변주차장 내 일방통행 검토 바람. ○ 간선도로에 인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불편하므로 한쪽 방향에 차단봉을 설치해서 보행로 확보하기 바람. ○ 군농협 앞 버스승강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거창교회 앞 강변주차장 진·출입로 보행로 확보 및 개선 ○ 창포원 사거리 진입로 회전교차로 추진 검토 ○ 거창위천 수변조성사업 조성에 있어 사업들이 적절한 위치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운동기구 설치 시 바닥을 탄성재로 포장할 것. ○ 장마 대비 하천 및 교량 주변 위험표지판 정비 필요. ○ 풀베기 사업 시 주민들의 구체적인 민원 내용에 대해 다음 연도 사업에도 그 민원 내용이 계속 반영될 수 있게 방안 마련할 것. ○ 창동초등학교 후문 골목길 일방통행 지정 검토. ○ 거창 IC 톨게이트 조형물과 진입로 입구 조형물의 영상이 흐릿하므로 기능개선 조치바람. ○ 하천정비 준설사업에 있어 준설사업과 자연적인 하천 식생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국농소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방안 검토.
	⑤ 합천댐지원 사업 구역 외 지원사업 부적절	○ 합천댐지원사업 구역 외 지원사업의 경우 순수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역 외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주민편익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
	⑥ 농어촌버스 공영제 추진 검토	 ○ 버스공영제 추진에 있어 초기비용 부담과 당장의 비용증가 등 근시안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버스공영제 추진하기 바람. ○ 버스 공영제는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으므로 시행 타당성 용역 등을 검토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⑦ 청소년 대중교통비 무료지원 검토	○ 어르신들에 대한 대중교통비 전액 무료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청소년도 버스비가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⑧국·도비보조사업사전협의철저	○ 한들지구 농업용수 확보사업이 도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추진된 관계로 도 승인과정에서 공법 설계변경 등 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므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⑨ 국책사업 대응 철저	○ 국책사업인 고속도로 및 철도의 노선, IC 위치 등의 설계에 거창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방문을 통한 사전협의 등 대응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⑩ 준영구논두 렁사업 홍보 철저	○ 준영구논두렁사업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임, 대농이 많은 우리 군 실정에 필요한 사업이며 가뭄, 폭우로 인한 논두렁 피해 대비 등 효과성이 높으나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 므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전액 군비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도비확보 노력바람.
	①소형전기저상버스대체방안마련	○ 전기저상버스를 대형버스로 구입하고 있으나 구입비가 비싸고 승객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소형버스로의 대체가 필요함, 시판되는 소형 전기저상버스가 없으므로 중앙부처에 소형버스 제작 건의.
	⑫ 주민편익사업 철저	○ 주민편익사업 대상지 선정과 추진에 있어 투명성과 타당성, 효과성 검증에 대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의회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사업세부내역, 우선순위, 타당성 검토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③가북~해인사 간연결도로협의 철저	○ 가북~해인사 간 연결도로 개설이 중단된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합천군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④ 주차장 확보 등	 ○ 불법주차단속 건수가 많다는 것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증으로 소규모 주차장 개설을 위한 예산 증액 바람. ○ 실시간 주차정보 공유시스템에 대한 실효성을 파악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실효성이 있다면 신속히 추진하고 거창군 현실에 맞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된다면 소규모주차장 신설 사업에 집중하시기 바람.
	⑤ 과적차량 불시 합동단속 실시	○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심각하므로 석재운반 차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효과를 제고하기 바람.
	⑥건설기계공영주기장확장 및진 · 출입로확보	 ○ 정장리 공영주기장 진·출입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토지소 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이 시행되었음, 진출입로를 휀스로 막는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사전 대처로 민원발생 차단이 가능하였음에도 대처가 미흡했음, 향후 진·출입로 확보에 문제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효율성이 높음, 인근 잔여부지를 활용한 확장 검토.
	① 의회에 보고된 사항과 사업내용을 동일하게 추진바람 ®	○ 수승대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른 목에 편성해서 추경에 다시 예산 편성했던 예산으로 주차대수를 최소화하여 수승대로 유인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주문했던 사업임, 주차장 설치면수가 의회에서 요구한 주차면수와 다르게 확대추진되었음, 이러한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휴식공간 등은 보완이 필요하므로 조치 바람.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관련	○ 노인보호구역 제한속도로 인해 불편이 많으므로 마을에서 과속단속 요청 시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불편 완화와 주민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바람
	⑨불법으로방치된전동킥보드견인 검토	○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경찰서와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등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추진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① 자전거 교육장 정비 및 활용방안 검토	 ○ 자전거 교육장 관리는 대학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마중길 조성사업, 중동 주유소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변과 어울리도록 정비를 추진하고 적합한 활용 방안 강구하기 바람. ○ 자전거 교육장 공중화장실 설치도 검토하기 바람.
	② 도시계획 수립 관련	 ○ 아림고 옆 구 도시계획 도로의 연결방안 도시계획 정비시 검토 바람. ○ 원도심의 특징을 살려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재수립 시 방안 강구바람. ○ 가조 힐링랜드 주차장과 연결된 구 농로에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으니 도시계획 재정비로 소방도로로 지정 추진토록하고 도시계획에 신규 수요 반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도 시 건 축 과	③ 회전교차로 관리 관련	 ○ 회전반경이 좁은 회전교차로 전방에 바닥 홈파기 등을 이용한 주의환기로 감속을 유도하기 바람. ○ 대동리 회전교차로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위생, 악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바라며 분수대 조형물 설치에 있어 지역 상징성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4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	 ○ 방치된 자전거나 군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수거하여 수리 후 군민에게 싸게 판매하고 수익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추진 검토 바람. ○ 자전거도로 보수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적치물 관리, 주차 관리 등 실태파악 후 조치바람.
	⑤ 거창교 재가설사업 추진 철저	○ 거창교 재가설사업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 정비사업에 포함 되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재가설 시 거창교 북쪽 회전로터리도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⑥ 축사 허가 규제 완화 검토	○ 축사 허가에 있어 경남 시·군중에 농업진흥지역 외곽부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허용을 하는 시·군이 일부 있으므로 거창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거창도 규제완화를 검토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⑦ 도시재생사업 사업 추진철저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 카페 운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계획 잘 수립하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⑧거열산성진입도로노선변경검토	○ 거열산성 진입도로 추진에 있어 한들대교를 경유한 구치소 진입로는 국도 3호선의 연결도로 개설과 남부우회도로 개통 시 교통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선 변경 검토바람.
	⑨ 폐보도블록 정보 제공 검토	○ 거창교회에서 거창교 사이 보도블록 교체사업 검토하기 바라며 보도블록 교체 후 사용가능한 보도블록은 주민이 요청하면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주민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방안 마련 검토.
	⑩ 빈집 및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철저	○ 빈집은 위생, 화재, 우범지역화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하기 바라며 대평리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사고에 철저히대비토록 하고 철거 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LH를 통해 계속 사업을 챙겨 주시기 바람.
	① 마중길 조성사업 추진 철저	 ○ 거창대로 마중길 조성공사에 있어 기존 주차면 확보, 중앙분리대 수목식재 시 반대편 시인성 확보, 가로수 제거로인해 간판이 지저분해 보이므로 간판정비가 필요하며 전선지중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기 바람. ○ 가로수 제거와 같은 사업은 주민소통이 부족했음, 주민소통을 위해 알림 플래카드 게첨 등 안내와 소통을 통해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⑫ 시가지 환경개선 관련 등	 ○ 목욕탕 노후 굴뚝 주민안전을 위해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창동초등 앞 사거리에서 개봉교 사이 인도환경 개선 바람. ○ 새로운 자전거 스테이션 구축 시 자전거 안전모 보관함 미설치에 대해 검토 바람. ○ 빈집정비에 있어 재래식 화장실 부분 별개의 공모사업이 있는지 악취 등 시정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 죽전 도시재생 사업 주변 공사로 인한 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추진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 시내에 설치된 데크에 난간파손, 바닥 들뜸 현상 등 파손된 부분이 많아 군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통해 분기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한들대교 하자보수 하자보증에 의해 시공사가 완벽히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한들대교 강남 쪽 회전교차로 선행 문제로 회전교차로를 회전하지 않고 잘못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단봉이나유도선 조치 바람.
	① 염소 불법 사육농가 양성화 추진 바람	 ○ 염소 불법 사육농가에 지원이 불가하므로 양성화를 위해 임야에 가설건축물을 통한 축사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조례 근거 마련을 통해 양성화를 검토바람. ○ 도비확보나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염소 첨단 축사 시범 사업을 통해 사육환경 개선 검토.
	② 여성농업인 센터 공간 확보바람	○ 여성 농업인센터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농 업 축 산 과	③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 및 배달서비스 시행촉구	 ○ 농기계 배달서비스는 통영을 제외한 도내 타 지자체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음, 운반수단이 없어 농기계를임대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기바람. ○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농기계 운반용 1톤 트럭비치해서 농민이 임대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자주 사용하지 않아 농가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농기계수리용 공구 비치로 이용자 편의 도모 검토. ○ 농기계 임대사업소 소형농기계 매각에 있어 관내 농민에게온비드 홍보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여 관내 농민들도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간제의 공무직 전환이 필요하므로인사부서와협의를통해 전환이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바람. ○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반납 시 세척시설이설치되어 있는데 무허가이므로합법화하기바라며 농기계세척의필요성을 교육하기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 농기계 배달 사업이 어렵다면 한 권역만이라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기종별, 연령별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농기계 전복사고 알림 시스템 등 안전관리 검토 바람.
	④ 치유농업 담당부서 조정 등	○ 한방 녹색농업대학 등 치유농업 관련 업무가 전략담당관실 로 업무 이관되었으나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있음, 치유 농업 관련 업무는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거나 조정이 어렵 다면 전략담당관실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
	⑤ 펫월드 조성관련	 ○ 펫월드 조성에 있어 적자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으로 비용지출 부담 감소를 위해 수익창출 시설이 우선 고려되어야하며 콘텐츠 발굴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건축은 소규모로추진하기 바람. ○ 농업축산과에 반려동물 관련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펫월드 조성 시 반려문화 계몽 계도나 홍보 등 업무의 일부를펫월드에 위탁운영하는 방안 검토바람. ○ 펫월드 예정지인 사과테마파크는 공원으로서의 활용도가높고 지역활력타운이 위치하는 등 적합하지 않은 곳이므로펫월드 조성지를 스마트팜 지구 뒤 유휴부지에 추진하는방안 등 재검토 바람. ○ 반려동물 관련시설 이용 시 동물 등록제에 등록한 반려동물과예방접종을 한 반려동물에 한해서 입장할 수 있도록 추진바람.
	⑥ 축산퇴비 자원화를 통한 순환체계 구축바람	 ○ 축산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지역 내 축산퇴비 자원화를 통한 순환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양돈농가 액비 품질향상을 위해 미생물 공급 철저.
	⑦ 청년 농업인 관련 사업 홍보 철저	○ 청년 농업인 관련 사업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홍보부족으로 보이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⑧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지원현실화	○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단가의 인상으로 농가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은 줄어들고 있어 국.도비 지원 건의를 통해 농가부담을 줄여 주기 바람.
	⑨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관련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고 예산을 증액시켜 현실화하기 바람.
	⑩양봉산업지원농가직접지원 추진검토	○ 양봉산업 지원이 양봉협회를 통해 이루어짐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가에 직접 보조사업 시행 검토 바람.
	① 농업인 안전공제 농협 비조합원 가입율 제고 방안 마련	○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이 농협 조합원의 경우 보조 외 비용에 대해 농협의 보조로 100% 가입되고 있으나 비조합원의 경우 가입율이 저조하므로 홍보 및 지원방안 마련 등 조치 하기 바람.
	②사업변경시의회보고철저	○ 중·소·고령농 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자격 조건이 의회 보고 없이 변경되었음,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 할 것.
	③ 축산농가에 대한 한시적 지원 검토	○ 축산농가가 어려운 실정으로 한시적 지원 방안 검토.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① 거점 APC 운영 관련	 ○ 거점 APC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점들은 시정조치 바라며 마케팅 등 운영주체의 능력이 활성화에 있어가장 중요한 사안이므로 전문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APC 수탁기관 전국단위 공모 검토. ○ APC의 사과 원물 확보 방안으로, 거창사과 타지(안동)유출은 낮은 수매가와 수매절차 불편으로 인한 것으로안동 공판장의 경우 민간 은퇴자(서울공판장 은퇴자)를활용비교적용이하게 인력관리가 되고 있으므로 인력관리를비롯한 다각적인 APC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거창사과의 명성을 지켜가기 바람.
卜	② 스마트팜 청년 창업 추진 철저	○ 스마트팜 기반 구축에 있어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 므로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잘 구축하기 바라며 스마트팜은 청년을 농정에 참여시키는 유용한 방법 으로 고부가가치 작물을 통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작물 선정도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람.
업 기 술 과	③ 3무농업 마케팅 변화 검토	○ 3무농업 실천농가들의 농산물 판매가 집단적으로 3무농업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3무농업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바람.
	④ 귀농인에 대한 농업인 컨설팅 활성화	○ 귀농인에 대한 농업인 컨설팅 활성화로 거창 농업이 발전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⑤ 천적생태과 학관 및 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 천적생태과학관 및 미생물 배양센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거창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인증사업 등으로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고 전문직이 필요한 곳이므로 시간선택제 등을 활용해서 연구사 등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농업인들에게 미생물 무상공급을 검토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⑥ 거창한 거창 브랜드 포장재 지원	○ 거창한 거창 브랜드를 브랜드화하려면 다른 포장재 지원은 지양하기 바람.
	⑦ 자연재해보 험 불합리 개선에 노력	○ 자연재해보험 냉해피해 등에 의한 보험 수령 후에는 할증료로 인해 보험금이 많이 인상되므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어 농민 부담금을 덜어줄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바람.
	⑧거창브랜드쌀품질관리	○ 거창 브랜드쌀 적기·조기 수확으로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⑨ 병해충 관리	 ○ 사과 등 병해충 발생 시 법 개정으로 농가의 신고 의무, 예방교육 이수 의무, 소독 등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게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와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철저 ○ 병해충 관리 대응에 이상기후 긴급자금 예산편성 검토 바람.
	⑩ 직조필름 비닐하우스 시범사업 추진검토	○ 직조필름 비닐하우스가 장점이 많으므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바람.
	(II)농업회의소를 활용한농산물수급안정	○ 농업회의소를 통한 품목별 재배면적, 출하 정보, 가격 정보 등 유용한 정보제공으로 농산물 수급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②공동육묘장설치 지원확대	○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확대 검토,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③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추진 철저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의 빠른 추진으로 창포원에 부족한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④ 고제 사과테마파 크 정비	○ 고제 사과테마파크 전망대 관리 등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바라며 병해충 등 예방을 위해 파크골프장과 다축과원이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⑤ 저품위사과 폐기장 운반 관련 지원 검토	○ 저 품위 사과 폐기장 운반 유류대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① 농업기술센터 축제행사에 다회용기 사용 검토	○ 농업기술센터 축제 행사 시 다회용기 사용 검토하기 바람.
행 복	②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 군청급식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지역농산물로 만드는 학교급식의 날 운영 검토,
~ 농 촌 과	③ G-애플 출입로 부분 사과고목 식재 검토	○ G-애플 출입로에 사과 고목나무 식재 검토,
	④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분산성 연계	○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분산성이 연계되어 공원화 될 수 있도록 조성 검토.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⑤ 의회 보고 철저	○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에 있어 의회에서 한 약속이 지켜 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⑥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사전 사업검토 철저	○ 남상면 대현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등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 후 미사용되고 방치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므로 마을 신청 사업에 대해 사전 사업검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⑦ 거창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입효과 제고	○ 귀농·귀촌인에게 거창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창군 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⑧음식거리 및대표음식점확보	○ 관광버스 방문객들을 위한 대형식당이 부족한 상황으로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거리, 대표 음식점 확보에 노력하기 바라며 마리 음식특성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 바람.
	9 거창푸드종 합센터 위탁관리	○ 거창푸드종합센터 위탁 시 전국단위 공모로 외부전문가를 통한 위탁 등을 검토하기 바람.○ 비영리단체가 운영이 적합해 보이므로 검토 바람.
	⑩ 체험휴앙마을 관리	○ 체험휴양마을 활성화는 운영주체가 중요하므로 적극성을 가진 한 사람을 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수익금의 일부는 마을회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 바라며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의 이용률이 높으므로 어린이 들을 위한 놀이 및 체험프로그램 발굴을 추진해 주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⑪ 별바람언덕 추진 관련	 ○ 감악산 별바람언덕, 꽃&별 축제 등의 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과 예산 투자도 고려하여야 하며 생활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기 바람. ○ 거창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 관광인프라 확보도 개발위주의 정책보다는 자연환경 보존과 힐링을 주제로 한 정책이 필요해 보이므로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바람. ○ 야자매트 제거 후 맨발걷기 코스 개발 검토 바람.
	① 휴업병원 안내 바람	○ 의정갈등으로 인한 휴업병원 군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② 거창군립노 인요양병원 관리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민간위탁 추진 예정으로 직영을 통해 축적된 관리 운영의 경험이 관리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구체적인 위탁계획 마련하기 바람.
보 건 정 책 과	③ 의료장비 내구연한 점검으로 안전성 확보	 ○ 보건소에 의료장비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절반에 이르고 있으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검 후 필요시 교체해 주기 바람. ○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코로나 장비가 부식이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기 바람.
	④ 모기해충 구제 철저	 ○ 모기해충 구제에 있어 방역도 중요하지만 모기 서식지 관리가 중요하므로 모기서식지신고센터를 홍보하고 보건소나 군청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띄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고온다습으로 인해 모기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집중 방역기간을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람.
	⑤ 간호사 수급방안 모색	○ 지역의료에 있어 간호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거창대학 간호학과 학생들과의 밀착 소통이 필요하며 졸업 후 거창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검토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⑥ 자동심장충 격기 설치 및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위급 시일반인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
	① 보건기관 태양광 시설 설치 시 누수 주의	○ 보건기관 지붕 태양광 시설 설치 시 철저한 검토로 시설 설치로 인한 누수로 지붕 개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건 강 증 진 과	① 치매환자 관리	 ○ 치매예방 도서를 지정하여 거창군 치매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마음도서관 등에 배치 검토 ○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사업이 사업량이 적으므로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가사업 검토 바람. ○ 치매안심마을로 운영 중이던 8개 마을 중 치매우수마을로 지정된 3개 마을을 제외한 5개 마을에서 진행 중이던 프로그램들이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단절되지 않고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② 보건소 추진 사업 홍보 철저	 ○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관련하여 이장회보 등을 통해 홍보바람. ○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홍보강화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수 있게 추진 바람.
	③ 적십자병원 분만센터를 통한 분만 방안 강구	○ 지역 분만이 계속 줄고 있으므로 내원 산모와의 간담회, 분만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비 지원 등 지원사업 검토로 적십자 병원 분만센터를 활용한 지역출산 방안 강구.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부서 수도사업	①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이 있어 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2025년 일몰제 전이라도 연내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주민들에게 계도와 설명으로 무리 없이 추진하기 바람. ○ 웅양과 위천 등 상수도 공급 후 지하수 등 여건이 좋아 급수율이 낮은 지역에도 상수도 공급사업을 시행 했음. ○ 지하수질 나빠 생활용수로도 부적합하고 대안이 없는 행복 마을은 원인자 부담금의 가중으로 인해 상수도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을주민들과 소통하여 해결하기 바람. ○ 소규모 급수 신규 수요지에 소규모 급수시설 지정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나 소규모 가구에서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수도가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비용 보조 방안 강구 ○ 웅양지방상수도 취수를 하천수로 하고 있으나 주변 농지가 많아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오염원이 많으므로 웅양 저수지에서 취수하는 방안 검토 바람. ○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지하수 수질관리, 취수원 청소 관리 철저
	② 달강수 용기 다양화	○ 달강수는 페트병으로 제조하고 있음, 재활용을 위해 라벨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바라며 뚜껑 개봉시 미세플라스틱 침투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냉·온수기용 대형용기 제작도 검토바람.
	③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순차적인 인상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기 바람.
	④ 정수장 운영 개선	○ 정수장 운영관리에 있어 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있었 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치 바람.
	⑤ 하수도 준설 철저	○ BTL사업으로 추진한 하수관거사업에 구배가 맞지 않는 일부 구간이 있어 주변 음식점에서 유입된 하수가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변에 냄새 등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므로 민원이 있는 곳에는 하수도 준설 등 조치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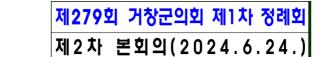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⑥ 지하수 관정개발 관련	○ 지하수 관정개발에 있어 100m 이상 암반관정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암반층까지 케이싱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⑦ 상수원보호 구역 관련	 ○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은 경로당 보수나 안길 정비 같은 일반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람. ○ 개봉마을 일부는 실질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지원사업에서는 빠져 있으므로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여열악한 배수시설 등의 기반시설도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① 스포츠파크 골프연습장 증설 신축에 따른 사설업체 지원	○ 스포츠파크 골프연습장이 기존 10타석에서 20타석으로 증설 신축되고 있음, 사설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요금이 절반 수준으로 요금인상 검토 바라며 낡은 시설로 사설업 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시설개선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체 육 시 설 사 업 소	②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 관련	 ○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 조성은 낙동강유역관리청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관수 및 배수시설이 빠진 채로 준공되어 준공 후 다시 관수 및 배수시설 공사를 함으로써 잔디 훼손 등 추가 비용 발생이 우려됨으로 시정하기 바람. ○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 조성시 난이도 있는 파크골프장 (벙크나, 언덕 등) 조성을 추진하고 관개시설 확충에도 철저를 기하기바람
	③ 다목적체육 관 주변 주차장 설치검토	○ 다목적체육관 주변은 행사 시 차량혼잡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주변 주차장 설치를 검토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④ 스위밍센터 건립 학교복합시 설 연계 추진	○ 스위밍센터 건립 추진이 어렵다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바람.
	⑤전 읍 · 면파크골프장건립미설치읍 · 면조속설치	○ 전 읍면 파크골프장 건립은 군수공약사업으로 미설치된 북상, 마리면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마리 면의 경우 건설교통과와 마리면, 체육시설사업소의 긴밀한 소통으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⑥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체육시설 관리	 ○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경제유발 효과를 위해 마케팅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고 마케팅 담당자를 전문관으로 지정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바람. ○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숙박시설이 관건인데, 체험마을의 경우 와이파이 등 불편한 부분이 있으므로, 체험마을 담당 부서와 연계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미리 갖춰 주기 바람 ○ 전지훈련을 많이 하는 합천군이나 남해군을 벤치마킹하기 바람. ○ 다목적 체육관이 준공됐으니 실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전지훈련팀도 적극 유치하기 바람 ○ 파크골프장이 완성되면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 검토바람. ○ 전국 대회 유치를 위해 실내 체육시설의 조도가 중요한 만큼 표준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설치 바람.
	⑦ 국민체육센 터 수영장 운영 관련	 ○ 수영장 안전요원 근무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 안전요원 부족으로 수영강사에게 안전요원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휴일에는 특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근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전수조사 후 환수조치하거나 상급기관 감사 의뢰하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 수영장은 사람이 많아 신규 회원 등록을 못하는 주민들이 많고 초·중·고등학교 수영 선수들 성적이 좋은 만큼 용역을 통한 수영장 신규 설치 검토 바람. ○ 수영장 안전요원 법적 기준을 맞추려면 교대근무 기준 4인이 필요하므로 법적 규정을 맞추기 바람 ○ 수영장 도약대 설치 기준이 수심 2.5미터인데 거창군의 수영 장은 1.5미터로 기준에 안 맞는 만큼 사고 방지를 위해 조치하기 바람 ○ 수영장 승급제도를 유보하지 말고 2년 이상 장기 회원 졸업제를 적극 도입하여 신규회원을 늘리기 바람. ○ 기초반에서 중급반 진급 인원은 절반에 불과한 만큼 중급 반과 상급반 수를 줄이고 자유수영 레인을 운영하기 바람. ○ 수영장 등록회원 최초등록일, 등록기간 등 전수조사 후 의회보고 바람.
	⑧ 국민체육센 터 볼링장 관리	○ 볼링장이 이용객 감소로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대회를 앞둔 선수들의 경우 12시까지 연습을 해야 하는 만큼 문닫는 시간을 늦춰주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⑨ 체육시설 관련	 ○ 제2창포원 스포츠 시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에 적합한 방향으로 체육시설이 위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스포츠파크 달리기 트랙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1레인, 2레인은 일반인이나 차량 등이 접근하지 못하게 통제선을 설치해 주기 바람 ○ 주 경기장 잔디가 외국산으로 관리도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드는 만큼 한국산 잔디로 교체 시공하기 바람 ○ 다목적체육관 설계 변경이 3회 있었는데 기본 설계에 포함 됐어야 하는 기본 요건이었던 것으로 보임. 행정이 관리 감독을 소홀했던 부분인 만큼 앞으로 체육시설 확충 시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다목적체육관에 농구 골대가 지금대로 설치되면 배구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만큼 배구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시기 바람. ○ 다목적 축구장의 인조잔디 교체 시기가 지나 선수들이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부상을 우려해 연습을 못하는 만큼 인조잔디 교체를 검토하기 바람. ○ 국민체육센터는 하절기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 연장 검토하기 바람
	⑩ 엘리트체육 관련	 ○ 학생 엘리트 체육 선수들의 외부 유출이 심한 만큼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 합천군은 유소년 축구팀에 연간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거창의 유소년 축구팀에 대한 지원 금액을 늘려주기 바람
	⑪ 운동기구 관리	 ○ 야외 운동기구가 방치된 곳이 많으니 전수조사를 통해 재사용 혹은 폐기하시기 바람 ○ 육상 종목에서 사용하는 뜀틀이나 매트 등 고가 장비가 보관 장소의 습기 때문에 폐기 처분돼 예산을 낭비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⑫ 군민체육대 회 운영	○ 마을별 예산이 일률적 편성되어 있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 바람.○ 군민체육대회에 파크골프 종목이 추가되도록 조치 바람
	③ 에콜리안 골프장 인수 대비	 ○ 에콜리안 골프장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인수 전 용역을 통해 운영이 잘 될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하기 바람 ○ 에콜리안 골프장에 거창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 검토.
거 창 사 건 사 업	① 맨발걷기 길 관리	○ 고령토 맨발 걷기 길은 비가 온 뒤 마르면 딱딱해져 맨발로 걷기 힘든 만큼 고령토를 부드럽게 만드는 경운 작업을 하는 등 관리해 주시기 바람

부 서	제 목	시정 및 조치 요구내용
소	② 거창사건배 상법 적극 추진	 ○ 거창사건배상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당시 회의록과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법안을 보강해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을 통해 대표발의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람. ○ 국회 전문위원들을 면담해 부족한 부분을 점검 받으시기 바람 ○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만큼 신원 면 지역구 군의원 및 민주당 군의원을 활용하여 대응하기 바람





조례안 입반의안



거 창 군 의 회 (총무위원회)

목 차

- 1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 정 과] **1**
- 건 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4**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7**
- 4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 무 과] **11**

의안번호 제2024 - 57호

_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_ 관한 조례안 -<mark>심 사 보 고 서</mark>-

2024. 6. 2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5. 3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과장 윤광식]

가. 제안이유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2) 협의회의 활동 지원을 정함(안 제3조)
- 3) 이중지원 제한을 정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u>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u>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창지구협의회는 재난구호에 앞장서고, 읍면 단위 봉사회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웃을 찾아 지역사회 복지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맡고 있는 단체로써,
- <u>협의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는 최소한의</u>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창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재난 구호 활동
 - 2. 협의회 운영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활동
- 제4조(이중지원 제한)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협의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_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_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6. 2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5. 3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가. 제안이유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거창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 및 할인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권면금액 확대함(안 제3조)가) 신설: 5만원, 10만원
- 2)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함(안 제6조·제7조)
- 3) 할인범위 확대, 추가할인 근거 마련함(안 제9조)
 - 나) 할인범위: 100분의 6 ⇒ 100분의 10
 - 다) 추가할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개정안은 <u>거창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 및 할인범위를 확대</u>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 현재 거창을 제외한 <u>도내 전 시군에서 할인범위를 100분의 10</u> 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종이형의 권면금액"을 "권면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50,000원권
- 6. 100,000원권

제6조제3항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거창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인 등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2024 - 59호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_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2024. 6. 2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5. 3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가. 제안이유

○ 거창군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 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우선 반 영함으로써 이들의 생업을 지원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용어 등 정비함(안 제2조·제7조의3·제10조)
 - 가) 국가보훈대상자 정의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신설
 - 나) 명예수당 관련 용어 등 정비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이름 변경: <u>참전명예수당</u> ⇒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 정부조직개편 사항 반영: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부장관**
- 인용 조문 삭제에 따른 정비
- 2) 생업지원 신설(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u>"국가보훈대상자"에</u>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단서를 추가 하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u>군이 설치·관</u>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 <u>독립유공자 등의 신청이 있을 시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u>한다는 내용의 제9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독립유공자 등의 실질적 생활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제7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생업지원) 군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 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중 "참전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명예수당
- 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 나.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전몰군경의 유족
- 다. 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
- 라. 보훈명예수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다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 1) 가목부터 다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2024 - 66호

_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__ _**심 사 보 고 서**_

2024. 6. 2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5. 3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이동복]

- ① 신원면 대현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 1. 제안이유
 - 신원면 대현마을은 4개 자연마을(상대,중신기,중대,하대) 36가구 53명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기존마을회관 노후(35년이상 경과) 및 시설규모 협소(현 규모, 84㎡), 불합리한 구조로 인한 주민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 도로부지내 위치한 불법건축물로 양성화 또한 불가하며, 연접산지 토사유출, 축대 붕괴 위험 등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 농촌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추진계획된 「신원면 대현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으로 마을진입부 연접 농지를 매입하여 커뮤니티센터를 신축(기존마을회관→철거)하고자함

※ 신원면 (기존)대현마을 회관

위 치	건축면적	건축년도	주요 참고사항
대현리	84m²	불명	개인도로부지 내 건물 위치
935-2(도로)		(35년 이상 경과)	→ 건축물대장 없음, 건물양성화 불가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 업 명 : 신원면 대현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934번지 일원

O 사업기간 : 2022. 8. ~ 2024. 12.

○ 사 업 비 : 995백만원(군(전환) 70%, 군 30%) - 마을 자부담 5백만원 별도

○ 사업내용 : 마을안길 정비 및 생활환경개선 1식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교통인프라 및 안길정비	커뮤니티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포함)	마을회관 철거 및 정비	부대 경비	비고
사업비	995	390	500	25	80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7 8	재산	재산의 표시		¹⁾ 기준가격	취득	カロリの	ш¬
구분	종별	소재지	면적(m²)	(천원)	시기	취득사유	비고
취득	토지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934	1,613	5,807	2024	커뮤니티센터 신축	

% $^{1)}$ 기준가격 적용 : 토지 \rightarrow 현.기준 공시지가

○ 취득 토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 : 첨부 2 참조

다. 추진경과

- O 2022. 7.: 공모사업 선정
- 2022. 10. ~ 2023. 12. : 기본계획(안) 수립 및 주민협의
 - 당초 공모사업 선정 사업계획(안)에 사업 실효성 논란, 토지 확보 문제 등으로 기본 계획 수립 지연
- 2024. 1. ~ 8. : 마을안길 정비 및 생활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 2024. 3. ~ 5. :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라. 향후계획

- 2024. 6. : 커뮤니티센터 신축예정지 보상협의
- **Q** 2024. 7. ~ 2025. 2. : 마을회관 신축공사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O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으로 인한 주민이용성 확보
- 기초서비스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정주여건 조성
- O 농촌환경개선과 주민편익제공으로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책자 참조

②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사업

1. 제안이유

○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부지에 대하여 이를 매입하여 건립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O 사 업 명 :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사업

O 위 치 :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원

O 사업기간 : 2022. ~ 2026. / 5년

○ 사 업 량 : 부지규모 30,000㎡정도, 건물면적 3,000㎡(1동 / 지상 2층)

• 화장로 3기,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휴게실, 주차장, 조경시설 등

⊙ 사 업 비 : 19,800백만원(국 4,155.9, 도 890.55, 군 14,753.55)

※ 부지매입비, 기반공사 및 주민지원(인센티브) 별도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45필지, 335,031㎡ / 첨부1 참조

다. 추진경과

○ 2022. 9.: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종합 기본계획 수립

○ 2022. 12. :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2023. 1.: 화장시설 건립 전담 부서 신설(전략담당관)

○ 2023. 2.: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 구성

O 2023. 2.: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공모(1개소 신청)

○ 2023. 5.: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23. 6. :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심의(부적합 결정)

○ 2023. 7.~: 선진화장시설 벤치마킹, 주민설명회 등

○ 2023. 10. ~ : 후보지 사전검토 요청지 현장 방문 등

○ 2024. 2.: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

○ 2024. 4.: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접수(9개소 신청)

○ 2024. 5. :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심의(1개소 선정)

라. 향후계획

○ 2024. 6. : 국도비 신청 및 행정절차 이행 착수

○ 2024. 7.: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

○ 2024. 9.: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24. 10. :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정

○ 2024. 12. : 건립 부지매입 완료

② 2025. 6. : 설계 완료 및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O 2025. 7. : 공사 착공

② 2026. 6.: 공사 완료

마. 기대효과

-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 수요에 적극 대처
- 친환경적인 화장시설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장례비용 절감 등 주민의 삶의질 향상 및 이용 편의 제고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책자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① 신원면 대현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 본 계획안은 <u>신원면 대현지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으로</u> 커뮤니티센터 신축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현재 사용하고 있는 <u>마을회관이 개인도로부지 내 건물이 위치</u>해 있고 <u>건축물대장이 없는 등 양성화가 불가</u>하며, 건축한 지 <u>35년</u> <u>이상 지난 건물</u>로 상당히 노후화되었음
- 또한, <u>연접산지 토사유출</u>, 축대 붕괴 위험 등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u>보수하는 것보다 신축</u>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보여집.

○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경로당 역할을 넘어 <u>다목적 복지생활</u> 시설로 활용하고 노령화와 정서적으로 단절돼 가는 <u>주민들이</u> 가족처럼 서로 돌보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바람.

②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사업

- 본 계획안은 <u>거창군 화장시설 건립</u>을 위해 <u>남하면 대야리</u> 1228-46일원 45필지 335,031㎡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현재 전국 평균 화장률이 91.8%, 국민 10명 중 9명이 장례 방식으로 화장을 선택하고 있고, 거창군은 물론 인근 <u>함양</u>, <u>합천, 산청군 등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총인구의 31% 이상</u> 차지하고 있어 <u>앞으로도 화장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u>할 것으로 판단되며
- 관내에서 화장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군민 들의 시간과 경제적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6.24.)

조 례 및 일 반 의 안 심 사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1
2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3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8
4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5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6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안·······19
7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의안번호 제2024 - 60호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5. 30.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5. 31.

다. 상정일자: 제2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과장)

○ 거창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신속한 화학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 제3조)
-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정함(안 제4조)
- 다.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정함(안 제5조~제13조)
- 라.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정함(안 제14조)

- 마.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정함(안 제15조)
- 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를 정함(안 제16조·제17조)
- 사. 교육·훈련 등,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18조·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4. 29.~5.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제정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u>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u> <u>거창군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u>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 O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등을 통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응급대응에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됨.

- 거창군의 경우, 2021년 3월 7일 경남 거창군 북상면 국도 (37호선)상에 정차중이던 황산 탱크로리[명성통운(주), 허가용량 13,600 L] 좌측면 상단부에 약 110kg(개근량 추정)의 황산이 도로상에 유출된 사고가 있었음.
- 조례가 제정되면, <u>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u> <u>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u> <u>활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u> 할 것으로 사료되며,
- O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 7. 토론요지 : 없음
- 8. 수정안 요지 : 없음

-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제2024 - 61호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지원에 관한 조례안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5. 30.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5. 31.

다. 상정일자: 제2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과장)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거나 환승 할인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여 거창군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을 정함(안 제2조)

1) 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2) 사업: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환승 할인,

공영버스 결손 보전 등을 위한 지원 다. 차등 지원을 정함(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 3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5. 9.~5. 2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 지원 조례」제2조제1항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시·군의 <u>재정지원</u>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례 제정이 꼭 필요했음에도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거나 환승 할인,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u>여객자동차</u>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 O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 7. 토론요지 : 없음
- 8. 수정안 요지 : 없음
-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제2024 - 62호

_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_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5. 30.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5. 31.

다. 상정일자: 제2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과장)

O 거창군 어르신에게 농어촌버스 이용요금의 전부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어르신, 버스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다.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라.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정함(안 제4조)

마. 지원 요건을 정함(안 제5조)

- 바. 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을 정함(안 제6조)
- 사. 교통카드 이용실태 조사를 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 45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5. 9.~5. 2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조례안은 <u>거창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농어촌버스 이용</u> 요금의 전부를 지원하여 <u>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u> 등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 거창군은 70세 이상 어르신이 1만 3,000여 명이며 고령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르신들에게 농어촌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O 현재 거창군의 고령화 추세와 정책을 살펴보면 버스이용 요금을 포함하여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수요와 예산증가가 예상되는 바, 예산 절감 및 확보 대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이며
- 조례가 제정되면 대상자 선정 시 주소지 확인,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절차와 교통카드 사용에 있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거창군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 등 안내와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 O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 7. 토론요지 : 없음
- 8. 수정안 요지 : 없음

-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제2024 - 63호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_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_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5. 30.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5. 31.

다. 상정일자: 제2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기술과장)

○ 2008년 이후 신설·확대·폐지된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을 현행화하여 변화하는 농업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기능, 위치 등을 정함(안 제2조·제3조)

나. 센터의 시설을 현행화함(안 제4조)

다. 교육훈련을 정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61조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 179,100천원 확보(교육훈련비)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4. 15.~5. 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이후 신설·확대·폐지된 <u>지역농업</u> <u>개발센터 시설을 현행화하고 용어와 체계 등 현 실정에 맞게</u> <u>조례를 정비</u>하여 변화하는 농업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 O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 7. 토론요지 : 없음
- 8. 수정안 요지 : 없음
-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제2024 - 64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_ 일부개정조례안 _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5. 30.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5. 31.

다. 상정일자: 제2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 거창군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파크 내에 생활체육시설인 거창군 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함에 따라 그 위치 및 이용 근거를 신설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의 명칭 등을 신설함(안 제2 조·제2조의2, 별표 1)
- 나. 사용료를 정비함(안 별표 1의2)
 - 1) 신설 :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2) 삭제: 파크골프장

다. 약칭 표현 등 정비(안 제3조, 별표 1의2)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1)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2) 「지방자치법」 제156조
- 나. 예산조치
 - 1) 2019년~2023년 예산 13,100백만원
 - 2) 2024년 예산 50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5. 10.~5. 2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설치에 따라 조례에 생활체육시설인 거창군 다목적체육관의 명칭 및 위치, 사용료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를 [별표 1의2] 체육시설 사용료로 변경하면서 거창군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는 거창군 체육관, 고제면 문화체육회관과 동일하게 정하여 신설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안이 제출됨으로써 파크골프장은 이 조례의 체육시설에서 삭제하는 사항임.
- O 거창군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파크 내에 생활체 육시설인 거창군 다목적체육관의 신설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 7. 토론요지 : 없음
- 8. 수정안 요지 : 없음
-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제2024 - 65호

_ 거창군 파크골프장 _ 설치·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5. 30.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5. 31.

다. 상정일자: 제2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 파크골프장의 확대 설치에 따라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파크골프장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파크골프장 설치, 명칭 및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나. 이용허가 등을 정함(안 제3조)
- 다. 이용료 및 반환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라. 안전교육을 정함(안 제5조)

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준용을 정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자치법」 161조
- 나. 예산조치
 - 1) 20022년~2023년 예산 2.300백만원
 - 2) 2024년 예산 204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5. 10.~5. 28.
 - 나) 예고결과 : 의견있음(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조례안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통합운영하던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파크골프장의 확대 설치와 이용자수의 증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u>파크골프장의 건전한</u>

발전과 군민의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거창군에서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파크골프장을 보면 36홀 1개, 18홀 2개, 9홀 8개로 총 11개의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이며 그중 36홀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납부한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요금은 인근 시·군 요금을 참고하여 정하였음.
- 파크골프 인구는 확대일로에 있고 파크골프장 설치도 확대 되고 있으므로 군민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거창군 집행부 검토의견은 미반영으로 나와 있음.
- O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 7. 토론요지 : 없음
-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반영 결과

○ 입법예고시 제출의견에 대해 부서의 검토결과 미반영되었으며 위원회 심의에서도 미반영하기로 하였음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제2024 - 67호

_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_ _ 동의안 _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5. 30.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5. 31.

다. 상정일자: 제2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6.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과장)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거창하천화경교육센터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119

다. 시설현황 : 793.81 m²(교육센터 496.81, 온실 297)

주.	요시설 및 면	용도	
	계	496.81	
	1층	115.06	교육장
교육센터	2층	211.48	주민휴식공간 (당초 휴게음식점)
	3층	170.27	교육장 및 영상관
유리온실		297.00	교육 및 체험

라.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마. 위탁사무

- O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 O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 O 그 밖에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바. 위탁비용: 131,521천원(연간)
- 사.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선정

아. 선정기준

- O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고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1명 이상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O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 평가
 - 위원회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산출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또는 단체 중 최고 득점자 선정
 - 응모기관이 1개인 경우 종합점수가 70점 이상 시 수탁자 선정

- 응모기관이 없거나, 기준 미달 시 재공고

4. 참고사항

- 가. 향후계획
 - O 2024. 8. ~ 9. :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 O 2024.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O 2024. 11. ~ 12. : 협약 체결 및 시설물 점검
 - O 2025. 1.: 위탁운영 실시
- 나. 관계법령 : 붙임참조
 - O「공유재산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O「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 O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다. 위탁운영계획 : 붙임참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22억(낙동강수계 관리기금 100%)의 사업비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가 2020년 12월에 준공되어 농업회사법인 ㈜강과사람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던 중, 재정악화로 2023년 11월 30일 수탁을 포기함으로써 2023년 12월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상시 근무자로 해서 직영관리해 오 고 있음.

- 전문성의 부족으로 <u>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활성화와 효율적인</u>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본 동의안이 제안되었음.
- 총 운영원가 167,831천원 중 전 위탁자 3년간 평균수입액인 36,310천원을 제외한 131,521천원을 위탁비용으로 정하였고 수탁자 신청자격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고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1명 이상 갖춘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음.
- <u>주례회의 보고</u> 시, 의회의 주문사항으로 환경교육 실적이 있는 수탁자 선정,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환경교육 의무 실시, 카페운영과 시설대관 보다 <u>환경교육 프로그램 활성화</u> 운영(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의 설립 목적)에 중점을 둘 것 등의 의견이 있었음.
- 각종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국비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센터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탁자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바,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O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 7. 토론요지 : 없음
- 8. 수정안 요지 : 없음
-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